

WTO체제 출범과 국내 양돈산업

1. 머리말

새로 출범하는 WTO체제 하에서 세계 각국의 개방조건을 보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만큼 관세를 붙이거나 차액관세제도 등에 의하여 개방을 하면서도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아예 없도록 하거나 최소화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물론, 즉 WTO 체제하의 개방조건은 UR협정의 원칙에 모두 상응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UR협상결과는 돈육의 수입 가격이 얼마나 되든간에 무조건 25%의 관세만 붙이면 무제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만약 생산이 과잉된 나라가 과격적인 가격으로 수출공세를 전개 할 경우 우리나라의 돈육시장

은 수입육으로 뒤덮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UR협상의 기본원칙(관세상당치 부과에 의한 개방 부과금 등), 즉 주어진 밥그릇도 못찾아 먹은 격이 되어 그토록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및 전문학자들이 개방조건 수정을 위한 UR재협상·후속협상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세계에서 42위인데 GATT에서의 부담금은 세계 6위이다. 국민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중한 부담을 한 우리나라가 GATT 제8차 회의인 UR에서 쟁길 것은 못챙기고 주기만 하였으니 인심쓰고 바보 노릇만 한 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렸던 것이다.

2. WTO 출범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

그러나 세상일이 분노만 터



장원석 교수
(단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뜨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한단계 한단계 차분하게 관철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첫째로, 정부는 UR협정서 원칙대로 수입육에 대하여 관세상당치(T.E.)에 해당하는 즉,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붙이도록 WTO체제하에서 절차를 밟는 노력을 해야한다. 정부로서는 이미 최종 개방이행 계획서(C/S)를 제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서명을 한 마당에 어떻게 절차를 밟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방이행계획서(C/S)의 내용 중 일부는 미국과 유럽의 UR이행법에서 이미 변경되었고 향후에도 파기 사례가 나타날 것이므로 그러면 선례를 포착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형식을 밟으면 된다.

더구나 우리 국회는 여야합의에 의하여 지난 12월 16일 UR이행 특별법(실질내용상의 명칭은 UR이행특별법이고, 정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한 공식 명칭은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미국과 EU는 「UR이행법」으로 명명하였음)을 제정하였다. 이는 개방조건의 수정을 위한 UR재협상·후속협상 요구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으로서, 현행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모처럼만에 발휘한 것이다.

이 법의 제2조엔 “경제주권의 보장”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조 2항은 정부는 UR협상의 결과가 UR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품목의 국내피해가 클 경우 WTO협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방조건의 수정을 위하여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WTO절차에 따라 노력해야 함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우리 양돈인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밝은 미래와 희망을 기대케 하는 일이다.

그외에도 이 법에는 보조금 지급, 특별긴급관세 부과, 수입으로 인한 이익금과 관세를 다른 분야에 유용하지 말고 반드시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농어촌 발전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제4조, 6조, 7조).

국민건강의 보호와 환경의 보호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고(제9조, 10조),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사업을 지원토록 의무화 하였다(제12조).

구조조정 사업도 년 1회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고 수출 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제도의 확충,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및 소득보조,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하였다.

여하튼 14개조로 되어 있는 이 법은

(1) UR협상의 결과 잘못된 개방조건의 수정을 위한 협상을 할 것

(2) UR/WTO체제에서 허용하는 각종 국내농축산업 회생 대책을 적극화 할 것

(3) 남북한간의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할 것 등

농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농민의 힘, 국민의 힘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즉, 이 법이 빛을 보기까지는 양돈협회도 가입되어 있는 농민단체협의회, 전농, 한농연을 비롯, 흥사단, 경실련, YMCA,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등 202개 단체의 연합조직인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몇십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회로부터 1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집회('94. 4. 9)가 있었고 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적이었음은 물론 민자당의 핵심 중진들도 국본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설득한 바 있다. 장관 주관의 비공식 간담회, 민자당 주최의 비

공개 토론회, 국회 외무위 주최 공청회 등에서 최소 3시간 반에서 10시간씩이나 계속되는 수 차례의 토론이 있고난 이후, 12월 8일 민자당으로부터 국본의 요구내용을 법조문화 한 민주당의 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통고를 받았다.

이제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 “진실은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이 되새겨질 뿐이다.

미국과 유럽수준의 농촌대책과 농산물개방조건 수정을 위한 UR재협상 요구를 정부는 그 동안 6개 책자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매도하였는데, UR이행 특별법에서는 국본의 요구를 거의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장기 정책하에 해야 할 일은 일본에서 시행할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이 제도는 상한 가격과 하한가격은 도입하는 제도하에서 가능한 것인데, 양돈산업도 중·장기 정책 과제로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때 돈육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서 고려해 봄 직할만한 일이다.

셋째, 대량 수입으로 인한 국내 돈육가격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절 관세와 보조금 관세 방법도 활용해야 한다.

넷째, 국제 시장 가격의 폭락할 경우 국내 양돈산업에 미치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최저 수입 가격 제도의 실시도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의 UR이행법안에 따르면 국제 시장 가격이 폭락할 경우 영역내에 미치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건포도와 가공체리에 대한 최저 수입 가격 제도를 2천년 1월 1일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이러한 선례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

다섯째, UR협상 결과는 각국이 수출보조금을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미국의 UR이행법은 오히려 수출보조금을 늘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도 그에 상응한 돈육수출보조 제도를 적극화 해야 한다.

이상은 UR 관련 대책이지만 이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돈협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바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속히 철폐하고 자조금 제도를 정착시키며 외래성 동물의 검역 및 종합방역 위생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유통구조 개선, 분뇨처리 시설의 적극적인 보조와 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3. 국본의 성명서

다음의 글은 UR이행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당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당시의 글을 그대로 옮겨 놓는 이유는 많은 국민마져 정부의 왜곡홍보 때문에 국본의 견해를 틀렸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오늘날은 국제화 전문화시대이다. 정확한 국제정보를 입수하고 전문지식에 의한 판단이 당리당략이다. UR이행법 제정이 실증한 셈이다.

국본이 요구하여 특별법에 담겨진 4가지 내용은 ①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UR 이행법에 상응한 조치, ② UR/WTO체제가 허용하는 국내 대책, ③ 남북한간의 거래를 민족 내부간 거래로 선언하는 내용, ④ 잘못된 개방 조건의 시정 노력 등이다.

첫째, 미국 및 유럽연합의 UR 이행법안에 상응한 조치는 ‘국가 주권과 국내법을 우선한다’는 것 등 9가지다. 이는 원칙적으로 UR협정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각국의 UR이행법안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장차 WTO체제하에 서의 협상 전략상 매우 중요하

므로 우리도 명문화 해야 한다. 물론 이 법이 국제법과 상충될 경우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강대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견지하려는 법 형식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강대국이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을 위배할 경우 그런 경우에 임하여 우리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되고 협상력 유지에도움이 된다.

둘째, UR/WTO체제가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법제화 또는 정책 조치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국회도 UR이행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반드시 시행 토록 조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양정제도 개선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식량 안보 목적의 수매 비축 제도 운용과 직접 지불 제도라든지 환경 보존 지원, 연구실험, 판촉 지원, 통합 의료보험제도, 농업 금융 지원 방법 개선, 송아지 생 산 장려금 지급 등을 비롯해 수출 보조, 국내 보조 분야 등에서 WTO체제 하에서 UR이 허용하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적지 않다.

셋째, 민족 내부간 거래 원칙을 어떻게 해서라도 WTO가 발족하는 계기를 활용하여 국제

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남북 간에 확정한 '민족 내부간 거래' 원칙을 동서독의 경우처럼 이번에 공인받지 못하면 장차 심화 발전될 남북한 경제 협력의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로 등장할 징후가 벌써 미국 통상부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5일 UR협상 때 쌀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이를 '경황중 잊어버렸다'고 실토했던 바 있다. 그러함에도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없다고 정부는 계속 강변하여 왔는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히려 그 반대 입장(1994. 10. 26)을 밝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해석을 무안케 한 바 있다.

넷째, 지난 해 12월 15일까지의 UR협상 때와 지난 3월 11일 개방 이행계획서(C/S) 제출 시 까지 잘못 협상한 주요 농축산물의 개방 조건을 UR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 원칙에 맞추어 시정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WTO체제 하에서도 계속 하겠음을 미리 선언해야 한다.

이런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고 UR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경제 주권이 훼손되고 농민 생존권은 악화 일로를 내 달리게 될 것이며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환경 생태계 및 국토의 균형 개발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UR이행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여야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정부 여당의 설득력 없는 고집과 정략적인 돌파방침이 실현된다면 또다시 국론 분열 양상과 제3의 UR파동을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 사회 단체는 우리 국회가 이번만은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 국가 주권을 지키고 국익을 살리는 차원에서 UR비준안을 신중히 다뤄 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 WTO 가입은 UR협상의 일부 결과이며 UR협정은 GATT 규약을 부분적으로 고친 결과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UR협정(GATT 규약 개정안)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비준 동의를 결의해야 하지 단순히 WTO가입 여부를 비준해서는 안된다. 행정부는 그 결과로서 WTO에 가입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본지